

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
1994. 6. 24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4년 6월 16일

. 회부일자 : 1994년 6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3 회 임시회

. 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4. 6. 24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유 의 재)

가. 제안이유

- 세계적인 인쇄 문화의 유적지인 청주고인쇄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로 이관하고
- 설치 근거 조례등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함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청주고인쇄박물관 설치조례를 폐지하고
- 이와 함께 충청북도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람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우 병 수)

충청북도 청주고인쇄박물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,

지방행정 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청주시로 이관하여 청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본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청주시에서 관리하므로서 옛 인쇄문화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을것이며 또한 박물관의 소장물에 있어서도 충북도전체의 역사적 유물이기 보다는 청주시에 한정된 유물로서 청주시에서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청주시로 이전하여 관리운영케 할 경우 동조례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청주시에서 설치근거 등의 조례를 제정하는등 이관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으로서 그 절차상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

본 폐지 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 : 도원안대로 의결(참석 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· 충청북도 청주고인쇄박물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(안)